

[2012.2.5] [23613 , 2012.2.3,]

() 02 - 500 - 2080~2081

1 () 「 」 .

2 () 「 」 (" ") 2 1 " "

- 1.
- 2.
- 3. . .

3 () 2 2 " "

(月齡) 3

- 1. 「 」 2 1 1 2 .
- 2. 1 . (伴侶)

4 () 2 5 " . "

- 1. 가
- 2.
- 3. 「 . 」 8 1
- 4. 「 . 」 8 1
- 5. 「 」 2
- 6. 「 」 31 10 .
- 7. 「 」 4 3 .
- 8. 「 」 2
- 9. 「 」 3
- 10. 「 」 6 15 .
- 11. 「 」 14 1
- 12. 「 . 」 3 4 28

(營農組合法人)

(營漁組合法人)

(農業會社法人)

(漁業會社法

人)

- 13. 「 」 14
- 14. 「 」 17 4
- 15. 「 」 2 7 8 .
- 16. 「 」 37 가 . 가 가 .
- 17. 「 」 5 가 .

5 () 4 3 " "

1. 「 」 32

2. 「 」 4

6 () 5 1 (" ")

2

3 1 가
(開議)

1 6

7 () (" ")

17

(" ") (" ")

1

[:2012.7.1] 7 1

8 () 19 1 2

21 1

9 () 21 1 " "

1. 5

2. 「 」 40 4

3. 「 」 2 4

10 () 24 2 " "

1. 「 」 40

2. ()

3. ()

4. ()

5. () ()

11 () 25 1 (" ")

)

1. .

2. (" ") . . .
가

3. . 가
4. 가

12 ()

1. 3 1
- 2.
- 3.

. 가 27 4 가 1
3

- 1.
- 2.
3. , , , 1 31

1 6

13 (.) 28 2
3

가 1 3

1

1 가 30

14 () 40 1 " "

) 40 1 , , . . (.

1. 「 」 2 1 가
2. 「 가 」 9 , ,
3. 「 」 2

-
- 4. . .
 - 1. 7 .
 - 2. 8 ,
 - 3. 9 10
 - 4. 15
 - 5. 29
 - 6. 33 1 34 1 , ,
 - 7. 39 , .
 - 8. 41 1
 - 9.

15 () , . .
 41 1 (" ")

- 1. 5
- 2. 14 2
- 3. , . . 1

- 1. .
- 2. 3

- 1. . .
- 2.
- 3. 14 3
- 4. .

- 1. :
- 2. . . : , . . .

1 5

16 () 44

- 1. 9 3
- 2. 10 1
- 3. 23 6
- 4. 28 . .
- 5. 29 1
- 6. 29 2
- 7. 29 4

(受理)

8. 31 2

9. 39 .

10. 41 , ,

11. 43 2

12. 45 2 (. " ")

13. 47 1 3 5 8 12 .

[:2013.1.1] 16 12 45 1 2

17 () 45 2 (" ")

, , , 가

1 2

18 () 45 4 " "

19 () (), . . .
(.)

가 「 」 24 가

1. 12

2. 15

3. 29

4. 31

5. 33

6. 34

7. 35

20 (.) 47 3 .

< 23613 ,2012.2.3>

1 () 2012 2 5 . , 7 1

2012 7 1 , 16 12 45 1 2

2 2013 1 1 .

2 () 22730 (")

3 () 가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1호	30	50	100
나.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2호	0	20	40
다.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1호	0	20	40
라.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2호	0	20	40

마.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3호	5	10	20
바.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2항제4호	5	7	10
사.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3호	30	50	100
아.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4호	30	50	100
자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5호	30	50	100
차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6호	30	50	100
카.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7호	30	50	100
타.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8호	10	20	40
파.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9호	10	20	40
하.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10호	30	50	100
거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·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11호	10	20	40
너.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7조 제1항제12호	10	20	40